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http://www.seoul.go.kr)

제3936호(그2)  
2023. 12. 14.(목)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8980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

**[훈 령]**

제105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4
제1051호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8
제1052호 서울특별시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 운영 규정 .....	10

**자치법규 등**

[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980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없어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 ① 법 제5조 제1항 각호 및 영 제35조의2의 입법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1. 법 제8조 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신고나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한다.
  - 2. 정당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이는 제1호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처분행정청인 자치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 3. 영 제35조의2 각호의 표시사항은 각 글자 크기 기준 가로·세로 모두 5cm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 4. 정당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309조, 제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된다.
- ② 본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철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할 수 있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집회현수막) 단체나 개인이 법 제8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여야 한다.
-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억제하여 시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 나. 실제로 집회가 개최하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여 난립되고 있는 현수막 개시를 제한하고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게 하여 집회 및 시위문화를 개선하고 시민들을 무분별한 집회 및 시위로부터 보호하고자 관련 조항들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가.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게 함(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 나. 법 제8조 제8호에서 정한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을 조례로써 정함(제11조의2 추가)
- 다. 집회현수막 설치 시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3제1호 신설)
- 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을 위한 집회현수막 설치 시 현수막 내용에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도록 함(제11조의3제2호 신설)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105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총 2,176명” 을 “총 2,145명”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공무직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명)

부 서 별	계	일반 종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종사원
					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기타			
<b>총 계</b>	<b>2,145</b>	<b>323</b>	<b>516</b>	<b>81</b>	<b>440</b>	<b>234</b>	<b>144</b>	<b>8</b>	<b>16</b>	<b>11</b>	<b>27</b>	<b>441</b>	<b>228</b>	<b>116</b>
<b>본 형</b>	<b>268</b>	<b>108</b>	<b>15</b>	<b>0</b>	<b>63</b>	<b>26</b>	<b>26</b>	<b>0</b>	<b>6</b>	<b>0</b>	<b>5</b>	<b>74</b>	<b>7</b>	<b>1</b>
민방위담당관	3				2	1	1					1		
빅데이터담당관	4	4												
정보공개담당관	8	8												
소방행정과	18				5	3	2					6	6	1
일자리정책과	22	22												
복지정책과	3	3												
안심돌봄복지과	1	1												
어르신복지과	1	1												
택시정책과	1	1												
물류정책과	1	1												
문화재관리과	11	2	9											
<b>보건의료정책과</b>	<b>1</b>	<b>1</b>												
감염병관리과	3	3												
총무과	169	55			54	22	23		4		5	60		
주택정책과	2	2												
건축기획과	2	2												
광화문광장사업과	10				2				2			7	1	
동물보호과	8	2	6											
<b>직속기관</b>	<b>303</b>	<b>62</b>	<b>2</b>	<b>0</b>	<b>120</b>	<b>94</b>	<b>19</b>	<b>0</b>	<b>2</b>	<b>2</b>	<b>3</b>	<b>95</b>	<b>24</b>	<b>0</b>
서울시립대학교	106	22			21	10	8		2		1	43	20	
보건환경연구원	25	8			10	4	4			2		7		
인재개발원	6											6		

부 서 별	계	일반 총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총사원
					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기타			
서울종합방재센터	10	7			2						2	1		
농업기술센터	1											1		
119특수구조단	1											1		
소방서	121	25			75	75						21		
소방학교	20		2		6	3	3					8	4	
<b>시민안전체험관</b>	13				6	2	4					7		
<b>사업소</b>	<b>1,564</b>	<b>153</b>	<b>499</b>	<b>81</b>	<b>257</b>	<b>114</b>	<b>99</b>	<b>8</b>	<b>8</b>	<b>9</b>	<b>19</b>	<b>262</b>	<b>197</b>	<b>115</b>
상수도사업본부	125	9	6		52	21	21				10	45	9	4
<b>미래한강본부</b>	146		76		6	1	1		1	1	2	56	3	5
데이터센터	8				3	3						3	2	
시립어린이병원	41	7			9	4	5					11	3	11
시립서북병원	62	7			12	5	6		1			9	9	25
시립은평병원	24	2			8	4	4					7	5	2
서울역사박물관	123	37			28	14	14					25	33	
한성백제박물관	82	41			14	4	4		1	1	4	8	19	
서울시립미술관	48	3			14	9	5					17	10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67		44											23
서울도서관	3	3												
서울역사편찬원	6	5										1		
품질시험소	3											2	1	
동부도로사업소	26		1	14	8	4	4					1	2	
서부도로사업소	18		1	14								1	1	1
남부도로사업소	20		1	13								2	3	1
북부도로사업소	20		1	14								2	1	2
성동도로사업소	17		1	13								2	1	
강서도로사업소	17		1	13								2		1
중랑물재생센터	10		3		3	2		1				3	1	

부 서 별	계	일반 총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총사원
					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기타			
난지물재생센터	7		4		1			1				1		1
서울대공원	188	4	57		67	29	20	6	5	6	1	26	8	26
동부공원여가센터	76	2	58									6	8	2
중부공원여가센터	111	1	87		3	1	2						20	
서부공원여가센터	134		93		2						2	4	29	6
북부공원여가센터	45		26		2	1	1						17	
서울시립과학관	47	26			6	3	3					8	6	1
서울식물원	69	4	39		11	5	5			1		10	5	
서울기록원	2	2												
아동복지센터	5				2	1	1					2	1	
차량정비센터	1											1		
공무원수련원	13				6	3	3					7		
의회사무처	10	0	0	0	0	0	0	0	0	0	0	10	0	0
의회사무처	10											10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기관(부서)별 공무원 정원조정 검토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관(부서)별 정원조정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총 정원을 2,176명에서 2,145명으로 31명 감원 조정(제4조 및 별표)



◆ 서울특별시훈령 제1051호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후단 중 “청원 사항” 을 “청원사항” 으로 한다.
- 제3조 중 “청원심의회” 를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심의회” 를 “심의회외”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로, “이내가 맡고” 를 “이내로 하고” 로 한다.
-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8조제2항 중 “제15조에 따른” 을 “제15조제1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 처리 기간 만료일 3주 이전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유,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등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을 “심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석하는 회의” 를 “대면회의”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를 “심의의결서” 로 한다.
- 제11조제4항 중 “처리부서의” 를 “처리부서에” 로 한다.
- 제13조 중 “관계 공무원” 을 “처리부서 외의 관계 공무원” 으로 한다.
- 제14조 중 “통보하고” 를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로, “심의 결과” 를 “심의결과” 로, “처리 결과” 를 “그 결과” 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경우 처리부서와 주관부서의 사전 협의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원심의회 심의 생략 근거를 명확히 함(제8조제2항)

나. 처리부서는 주관부서에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유,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제8조제3항)

◆ 서울특별시훈령 제1052호

서울특별시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1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서울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3.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맡는다.

1. 시장
2. 제4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2)부시장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안전 및 재난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의 장
  2.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제2조의 안건이 발생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이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맡는다.

제9조(실무협의회) 시장은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후속조치 등)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를 설치(제2조)

나.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3조)

다.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제척 등 사유, 위원장의 직무 규정(제4~7조)

라. 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하는 경우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제8조)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